##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50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이종성·정경희·정점식

최승재 · 김승수 · 안병길

이명수 · 배현진 · 박덕흠

김태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한부모가족이나 남성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막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018년 기준 전국 수유 시설 3,25 9개소 중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은 2,057개소로 63.1%이고, 출입이 불가능한 수유시설은 1,202개소인 36.9%임.

이에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의 유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시설 및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 등</u> ) 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u>모유수유시</u>	<u>모유수유시</u>
<u>설</u> 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설 및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의3에 따른 <u>모유수유</u>	6 <u>모유수유</u>
<u>시설</u> 설치 지원 경비	<u>시설 및 수유시설</u>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